

제 20 장 제도 규정 및 행정

제 20.1 조 공동위원회

1.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. 공동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장관급 대표자 또는 그들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이 된다.
2. 공동위원회는
 - 가.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한다.
 - 나. 이 협정의 일반적인 기능을 검토한다.
 - 다. 이 협정의 추가적인 정교화를 감독한다.
 - 라. 양 당사국간 무역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.
 - 마. 부속서 20-가에 기재된 것들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, 소위원회,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한다.
 - 바. 제21장(분쟁해결)에서 부여된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,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. 그리고
 - 사.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.
3. 공동위원회는
 - 가. 제21.6조(패널의 설치)에 따라 설치된 분쟁해결패널 및 제8장제2절(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)에 따라 설치된 재판소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, 이 협정과 관련한 해석의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.
 - 나. 비정부 인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.
 - 다.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그 밖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그리고
 - 라. 이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개정 또는 수정 및 부속서 1-가(다자간 환경협정)의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.

- 마. 분쟁해결패널위원에게 지불될 보수 및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. 그리고
 - 바. 자신의 절차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.
- 4. 제 3 항라호에 언급된 개정은 국내적으로 필요한 각 당사국의 법적 절차의 완료를 조건으로 한다.
- 5. 공동위원회는 위원회, 소위원회,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, 위원회, 소위원회,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는 공동위원회가 승인하는 권한에 따라 작업한다.
- 6. 공동위원회의 결정과 권고는 상호 합의로 정한다.
- 7. 공동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에 회합한다.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, 공동위원회의 회기는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, 또는 이용 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단으로 개최된다.
- 8.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 또는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의 회의와 관련하여 교환된 비밀 정보를,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.

제 20.2 조 협정 조정자

- 1. 각 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 후 60일 이내에 협정 조정자(이하 “조정자” 라 한다)를 임명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.
- 2. 협정 조정자는
 - 가.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, 소위원회,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조정한다.
 - 나. 공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위원회, 소위원회,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설치를 공동위원회에 권고한다.
 - 다.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가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한다.
 - 라. 이 협정에 따라 규정된 통보 및 정보를 접수하고,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간 의사소통을 촉진한다. 그리고

마. 공동위원회가 위임하는 대로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한다.

3. 조정자는 필요시 회합한다.

4. 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든지 서면으로 조정자 특별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. 회의는 그 요청 접수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된다.

부속서 20-가
위원회, 소위원회,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

1. 설치된 위원회는
 - 가. 상품무역위원회
 - 나. 원산지 규정 및 관세 위원회
 - 다.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
 - 라. 표준 관련 조치 위원회
 - 마. 무역구제위원회
 - 바. 금융서비스위원회
 - 사. 정부조달 위원회
 - 아. 지식재산 위원회, 그리고
 - 자.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
2. 설치된 소위원회는
 - 가. 임산물 무역 소위원회, 그리고
 - 나. 자동차제품무역소위원회
3. 당사국의 요청으로 설치될 수 있는 작업반은
건축 제품 및 관련 조립에 관한 표준관련 조치에 대한 작업반
4. 설치된 그 밖의 기구는
 - 가. 환경협의회, 그리고
 - 나. 장관급 노동 협의회

부속서 20-나
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

1. 한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과 그에 상응하는 캐나다의 이익,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위한 양 당사국의 약속,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, 양 당사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한다. 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역외가공지역의 설립 및 개발을 통한 추가적 경제개발에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다.
2.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. 위원회는 이 협정 발효 1주년이 되는 날 또는 그 전에 회합하며, 그 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때 회합한다.
3.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들을 결정한다. 위원회는 그러한 모든 역외가공지역이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. 위원회는 또한 역외가공지역의 지리적 구역 내에서 원산지 최종상품에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 가치의 최대 한도를 설정한다.